

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
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0. 10. 19.

運 營 委 員 會

專門委員 金 玉 然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
공개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9호로 2020년 10월 8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집행 및 사용제한 규정을 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 정함 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교육 및 점검에 대한 사항 (안 제7조)

마.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함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근거

- 「지방회제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
-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
-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결과(2020. 10. 8. ~ 10. 13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언론·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불신을 해소시키고, 맑고 투명한 의회상 확립 및 의회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
- 안 제3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하여 「공직선거법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에 따라 사용·집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인 의정 활동을 벗어난 대표적인 사적 사용 사례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자가 간과하기 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.
- 안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매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7조는 의원 대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,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모니터링, 연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8조에서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,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」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있음.

○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

-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,
- 아울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시대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
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 2.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 3.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 4.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- 1-4. 생략
5.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,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국가기관 및 같은 호 나목의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의 일정에 관한 정보

3 지방회계법 시행령

제64조(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

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고금 관리법」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-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4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업무추진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.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, 의회사무기구의 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,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

나.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: 지방의회 의장·부의장·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

2. "회계관계공무원"이란 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추진비의 집행)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)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

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5조(세부기준 등)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